

공공디자인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egal Project to Resolve Urban Problems by
Public Design

- On Crime Prevention -

김 창 휘*

차 례

- | | |
|----------------------------------|-------------------------------------|
| I. 서 론 | IV. 공공디자인으로서 셉테드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법적 과제 |
| II. 도시 문제와 공공디자인의 상호 관계 | V. 결 론 |
| III. 공공디자인으로서 셉테드 관련 법규의 종류와 문제점 | |

국 문 요 약

경찰의 임무 중 첫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한다.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이 가장 좋은 임무수행 방법이다. 범죄의 예방 수단으로 디자인적 요소 내지는 의미가 담겨있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환경설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좁혀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공공시설물, 구조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셉테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법률은 물론이며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조례를 통하여 셉테드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셉테드 관련 단일·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법의 한 두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그 효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셉테드의 필수적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며, 셉테드가 물리적 개선에 치중되면서 사후 관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식개선이 부족하다. 또한 셉테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공무원, 전문가, 주민참여 등)이 부족하다.

* 나사렛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별히 셉테드를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도시를 파편적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도시 전체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셉테드의 심미적 요소와 범죄예방 기능을 갖춘, 즉 공공디자인적 요소가 도시의 자연경관과 상호 조화롭게 진행될 때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도시는 브랜드화 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와 관련된 개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공디자인의 한 유형으로서 셉테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의 검토를 함과 아울러 건물 중심, 시설 중심 등 물리적 개선으로 인한 도시의 한 부분적 차원에서 셉테드가 보여질 수 있는 도시의 파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 주제어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셉테드기본법, 범죄예방기본법, 도시디자인

I. 서론

경찰의 임무 중 첫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한다.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이 가장 좋은 임무수행 방법이다. 범죄의 예방 수단으로 디자인적 요소 내지는 의미가 담겨있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환경설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좁혀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공공시설물, 구조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셉테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의 삶에 기여해야 한다. 안전이라 함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전제로 삶에 있어서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신체적인 손상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맞는 안전한 장치, 내지는 제도를 만들어 위험요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도시에서 삶을 영위한다. 도시는 산업화로 인구가 집중하고, 도시의 토지이용은 고도화 되면서 각종의 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변화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각종 범죄의 발생이 늘어나고 재난, 교통사고 등 발생이 많아지므로 인하여 안전한 삶에 위협이 됨과 동시에 “삶의 질”마저 황폐해진다.

그동안 국가는 이러한 일련의 도시문제를 단편적으로 파악하여 범죄의 증가라든가 교통사고의 발생증가, 각종의 재난 등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바,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 접근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실질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대책의 수립은 물론, 범죄로 인한 안전문제가 주변의 객관적 환경 요인으로부터도 그 발생빈도가 높아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는 도시문제, 즉 범죄의 발생원인 중 객관적 환경요인에 기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하 ‘셉테드’로 하기로 한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사한 개념이 법규에 제시된 최초의 사례는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복합시설의 경우 주거공간의 방법과 안전’을 고려하게 한 부분으로 당시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전혀 없었던 시기여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¹⁾ 2005년 경

찰청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경찰조직이 셉테드 추진계획을 수립, 2005년 7월에는 판교신도시에 셉테드 원칙적용에 관해 협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 따른 연구²⁾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개별 법률상의 조항³⁾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셉테드를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다.⁴⁾ 그러나 셉테드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단일·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셉테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15년에는 「범죄예방기본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의 실효성 확보수단 차원에서 셉테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근거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셉테드 관련 조례나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검토하여 보았다. 즉 「경관법」이 그것이다. 동법은 2014년 전면 개정을

- 1) 이창훈·최진혁·권도이,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관련 법제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셉테드학회, 2017, 286쪽.
- 2) 박현호,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술적·제도적 발전 방향 연구”, 경찰과 사회, 제2집, 경찰대학, 2007 참조.
- 3) 2014년 5월 「건축법」제53조의 2를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5년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제정하였다. 그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일부 규정이 있다.
- 4) 2016년 4월 기준 전국에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5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하혜영·권용훈,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115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5. 2., 2쪽).

통하여 인구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며(제12조),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내지 제28조). 일부 자치단체는 동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법의 근거가 부족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동법은 국토의 체계적 관리차원에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디테일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서 국토의 경관형성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려 도시 전체의 경관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런데 경관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가 더 많이 제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한다)이 새로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법」의 제정이유는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하고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을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 바,⁵⁾ 동법에서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 제1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디자인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공공디자인 관념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셉테드는 바로 공공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법」이 이른바 「범죄예방기본법(안)」이 제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셉테드를 위한 중요한 근거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법」을 근거

5) 법제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참조.

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위에서 언급했지만 디자인이 공공적 마인드를 포섭하면서 「공공디자인법」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에는 디자인을 통한 ‘공공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이 실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문제의 해결에 있어 디자인적 접근을 통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의 예방이 근거를 갖게 된 것은 물론,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까지도 도시의 심미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삶의 질에도 긍정적 요소를 줄 수 있게 된 것이고 넓게 보면 경관법의 목적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의 안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셉테드를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만 이루어진다면 도시를 파편적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도시 전체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셉테드의 심미적 요소와 범죄예방 기능을 갖춘, 즉, 공공디자인적 요소가 도시의 자연경관과 상호 조화롭게 진행될 때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도시는 브랜드화 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도시문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공공디자인의 한 종류인 셉테드의 근거법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셉테드에 의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6) 동법 제6조에 근거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이 있다.

Ⅱ. 도시 문제와 공공디자인의 상호관계

1. 도시 문제와 공공디자인의 상호관계

1) 도시문제와 공공 정책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자유로운 사회적 관계나 풍요로운 물질의 향유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확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일반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가 범죄문제인 것이다. 그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 문제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도시팽창과 함께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삭막한 도시환경, 교통 혼잡 및 사고증가, 무한경쟁 속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문제, 계층 간의 갈등, 범죄의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국가는 도시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가의 정책수립에는 문제의 원인, 사회적 여건, 대상 등이 다양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여러 방면의 정책검토를 통하여 최종적 정책수립과 함께 집행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법률의 제정으로 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삶의 질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범죄임을 볼 때, 국가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민의 삶이 안전하도록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먼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복지적 요소)이 충족되면 문화적 심미성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며, 국가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가를 디자인(공공디자인)적 접근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왔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⁷⁾ 즉 도시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디자인(공공디자인)적 사고가 접목되게 된 것이며, 바로 셉테드는 그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⁸⁾ 도시문제에 대한 디자인(공공디자인)적 접근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가치 있는 삶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은 물론이며, 디자인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사람 중심의 권리를 추구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문제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⁹⁾

| 도시문제 | 기존 접근 | 디자인적 접근 |
|------------------|-------------|---------------------|
| 교통안전사고 | 교통안전시설 설치 | 시설안전 디자인(CPTED기법) |
| 공공시설안전 | 획일적인 시설 | 공공디자인(CPTED기법) |
| 범죄·폭력·자살 | 방법 강화, 경찰투입 | CPTED기법 도입 |
| 사회적 약자(편의성, 접근성) | 획일적인 시설 | 유니버설디자인 |
| 사회적 병리현상 | 상담원, 전화설치 | 서비스디자인(힐링, 커뮤니티디자인) |
| 도시침체 | 하드웨어로 접근 | 소프트웨어로 접근(CPTED기법) |

7) 한국셉테드학회,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박영사, 2015, 83-85쪽 참조.

8) Christopher Ansell and Jacob Torfing Ed., Public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and Design, Routledge, 2014, pp. 1-18.

9) 윤지영,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의 힘”, BDI 포커스, 제189호, 부산발전연구원, 2013. 2, 3쪽 참조.

2) 공공디자인의 의미

도시문제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은 도시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도시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소를 정하며,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하지만 형태적 미학만을 추구한 공공디자인은 그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실현을 간과할 염려가 있다.¹⁰⁾ 한편 지난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공공디자인법」은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공공이라는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와 그 확장성은 그것이 다루고자 하는 명확한 실제적 범위를 때론 흐리게 하지만, 공공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참여주체간의 합의라는 민주적 참여,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한 접근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공공디자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지향만이 아니라 디자인을 통한 실천과 도시공간에서의 실제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조형 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혁’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¹¹⁾ 여기에 더하여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의 행태적 문제와 심리적 접근을 위한 형태와 색채, 재질의 3요소가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지 집중을 해야 한다.¹²⁾

10) 박소영·전영훈, “공공디자인을 통해 발현되는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238호, 대한건축학회, 2008.8, 84쪽.

11) 최성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조명”, 조명·전기설비 제23권 제5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9.10, 13쪽.

3) 공공디자인의 범위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시행주체에 따라 구별될 수 있겠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공무원탁사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시행주체가 실행주체도 될 수 있지만 실행주체는 디자인 전문회사, 대학 등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겠다. 특별히 공공디자인의 영역에서 주요한 한 당사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 주요한 참여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그 성격상 산업디자인과는 다르므로 참여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그 지속성과 공공성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와 지속적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지난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실상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실행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에는 그 근거법이 만들어 지면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은 증대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셉테드와 연결되면 범죄예방의 의미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 범위를 설명하자면 도시의 경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을 제외한 부분이 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건축은 공공 건축물을 제외하면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개별적 특성, 목적 등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도시는 개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별의 총체적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건축에 대한 공공성 여부 논의가 중요하다

12) 위의 글, 13쪽.

다고 하겠다.¹³⁾¹⁴⁾¹⁵⁾ 물론 주변 건축과의 관계, 건축물의 군집으로 형성되는 도시 경관형성, 건축물의 색채 군(群)이 이루어 내는 도시색채, 건축물에 부착되는 각종 옥외광고물 등이 공공성의 논의의 대상이 된다. 민간건축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기본계획과 「경관법」상의 경관기본계획 등은 도시의 창의성을 억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나 유도사항, 방향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공적 성격의 민간건축 영역이 「공공디자인법」시행 전에는 이른바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역할을 일정부분 건축법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하였다(각주 13참조). 이제는 「공공디자인법」의 시행으로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흡수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셉테드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공공디자인법」은 제2조 제3호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13) 위의 글, 14쪽.

14) 현재 「건축법」은 민간건축물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동 시행령 제61조의 3(건축물의 범죄예방)은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5) 민간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리성을 갖는 영업공간의 경우와 법령에 범죄예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후자는 범죄의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설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저야한다(한재경, 범죄발생공간의 소유·관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제5권 제4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158쪽.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밖에 가 항목부터 바 항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2. 도시문제에 대한 공공디자인적 접근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가지 공공정책을 큰 방향에서 구별하여 보면, 특히 도시와 관련하여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각종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성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는 바, 두 방향 모두 삶의 질을 향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들이지만 양자가 적당히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다. 이 문제를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개발과 성장의 측면에서는 산업디자인의 활성화는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안전성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측면 다시 말해서 공익적 측면에서는 공공디자인이 그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영역에서 디자인 기술적 측면과 함께 인문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추진될 수 있는 영역이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디자인(CPTED)과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문제에 대한 공공디자인적 접근 방법은 디자인의 개념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이전에는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디자인 요소를 구성하는데 시각적 개념을 중요시했다면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뿐 아니라 창

조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와 일을 디자인에 포함하고 있다.¹⁶⁾ 즉 디자인 영역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적 측면과 인문학적 요소의 결합 뿐 아니라 과학의 영역까지 포함한 분야가 된 것이다. 또한 그것에 디자인 수요자의 요구가 더하여져 ‘서비스디자인’ 개념이 도출되는 바, 기술 중심이 아닌 고객의 요구 중심으로(seeds base에서 needs base로) 디자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수요자의 요구를 공공정책에 반영하게 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데 이것을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고 부른다.¹⁷⁾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그 대상과 목적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디자인과 편의를 위한 디자인을 모두 포섭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셉테드와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1)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CPTED)

고도의 산업사회의 진입과 함께 도시의 급속한 발전은 많은 도시,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윤리적 규범도 사라지고 있다. 인간성 상실, 물질만능주의, 빈부격차에 따른 박탈감 등은 범죄의 급증이 되는 배경이 되었고, 도시의 삶은 사회적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며, 삶의 질은 악화 일변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이며 이러한 범죄로 인한 범죄불안감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시에서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16) 표현명·이원식, 서비스디자인이노베이션, 안그래픽스, 2012, 16쪽; 박순정, “서비스디자인과 창의적 통섭의 관계성 연구 - 공공서비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4 No.4, 2014, 1023쪽 “재인용”.

17) 박순정, 위의 논문, 1024쪽.

도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시민의 삶이 안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도시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과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 등을 표방하며 범죄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공공디자인이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는 범죄발생을 야기 시키는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며,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함이 강화되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게 됨으로 인하여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범죄예방기법이다.

이 이론은 Jane Jacobs의 1961년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저서에서 도시 재개발의 비극을 예상하면서 재개발과 함께 지역은 파괴되고 범죄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결책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는바, 그것에 영향을 받은 Jeffery가 1971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CPTED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건축학자인 Oscar Newman이 1972년 Jeffery의 이론 중 영역성에 대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을 만들었다.¹⁸⁾

셉테드 이론에서는 인간환경 및 사회·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태에

18) 박현호, 범죄예방 환경설계 -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2017년, 28-30쪽;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 박영사, 2015, 12-16쪽.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와 경찰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2) 접근통제(Access Control)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등의 3가지 주요 전략과 함께, 4) 활동성 지원(Activity Support) 5)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 Management) 등의 부가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⁹⁾

한편, 셉테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실효성이 입증되어 법령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²⁰⁾,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셉테드와 관련한 정책 및 조례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 범죄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술적 연구뿐 아니라 국토계획, 도시재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공원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잠재적 범행기회의 차단 및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효과성이 관련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분야에 적용되어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²¹⁾

2)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Universal Design)

오늘날에 있어 도시를 규정지을 때 우리는 의도된 환경, 인위적 환경 등을 연상하게 되며, 때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장소에 인간의 의지와

19) 위의 책, 90-101쪽 참조.

20) 위의 책, 50-60쪽 참조.

21) 박현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1권 제4호, 45-50쪽.

노력으로 형성된 도시공간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도시란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며,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을 말하기도 한다.²²⁾ 그러한 도시가 획일화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기는 어쩌면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기계문명의 발달과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는 대량생산으로 인한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표준화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준화된 시기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디자인 방법도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의 발전 등에 의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획일적인 공공구조물을 만들어왔으며,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맞물려 복지국가의 마인드가 생겨나면서 장애인, 유아, 노인 등의 소수를 배려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다방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공공공간도 지역성의 상실, 인간의 소외, 건축의 의미와 상징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도시, 사회의 문제에 디자인이 정책수립의 한 축이 된 것이다. 즉 어린이,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및 건축 공간, 시설, 제품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었는바, 이것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1970년대 신체장애를 지녔던 Ronald L. Mace가 'Handicap 2세미나'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처음으로 강연을 하면서²³⁾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 누구나가 공평하게 사

22) 네이버 국어사전.

23) 황주희, 유니버설 디자인의 발달사적 관점에서 본 “제1회 국제유니버설 디자인대회”의 의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1999, 27쪽.

용할 수 있을 것(Equitable Use) 2) 사용하는데 자유로울 것(Flexibility in Use) 3) 간단하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사용법일 것(Simple Intuitive Use) 4) 필요한 정보를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Perceptible Information) 5) 무심코 한 실수가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는 디자인일 것(Tolerance for Error) 6) 무리한 자세나 강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Low Physical Effort) 7)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과 같은 7원칙을 제시하였다.²⁴⁾ 한편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생성은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접근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또한 북유럽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노인인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일상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초창기에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 해인 1998년 4월 11일 시행되면서 사실상 유니버설디자인이 본격적으로 도시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 및 이동성에 관한 도시공공환경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은 버스쉘터, 택시쉘터, 지하철역사 진입로, 계단, 공공기관 및 건축물의 진입로, 일반 보도블럭,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공

24) 요시히코 가와우치./홍철순·양성용 역, Universal Design, 선인출판사, 2005, 143-145쪽(공공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전략 및 미래에 대해서는 Edward Steinfeld·Jordana maisel, Universal Design :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WILEY publishing, 2012.참조).

공정보 인지에 관한 대상으로는 안내표지판, 신호등, 시각장애인용 음성 신호장비, 시설물 관련 표지판 등이 있다. 또한 공공 공간 및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상은 공중화장실, 무인자판기, 공공가판대, 벤치, 가로조명 등을 선정할 수 있다.²⁵⁾

3) 사용자의 요구를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에 서비스디자인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즉 공공분야의 정책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 여기서 수요자라 함은 국민 또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될 것이다.²⁶⁾ 즉 공공분야에서 사용자(수요자)의 니즈 분석을 위해 디자인 리서치 기법을 사용하고, 컨셉 및 시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디자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교육, 의료, 치안, 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현안의 해결을 위해 현재 디자인적 문제해결 방법론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²⁷⁾ 도시문제 내지는 사회 현안 문제를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⁸⁾

25) 이준호, 도시공공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스템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2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1, 394쪽.

26) 박순정, 앞의 논문, 1024쪽.

27) 박순정, 위의 논문, 1025쪽.

28)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공공서비스수요자중심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보고서, 2013(박순정, 위의 논문, 1025, “재인용” 편집사용).

분야별 활용가능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 | |
|-----------------|--|
| <p>치안 / 국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환경 가이드라인 • 경찰의 진압효과를 높이는 제품 / 서비스디자인 •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의 절도 피해를 줄이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 병영 환경 개선을 통한 군내 사고율 감소 •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연구 • 군대내 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디자인 • 비무기 체계 서비스 디자인 •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병사들의 화합을 돕는 서비스디자인 • 병영 및 군수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 치안 및 국방 분야 근무 환경개선 위한 서비스 디자인 |
| <p>환경 / 에너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공공기관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에너지 절감 주거환경 디자인 •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행동을 유도 하는 디자인 • 에너지 절감 유도 고지서 디자인 • 국민경제 살리는 에너지 절약 시설 디자인 • 에너지 절감형 공공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정부, 지자체 청사) •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 • 에코 마일리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 대형 SOC 시행 중 친환경 디자인 적용 • 빗물정원을 만들기 위한 서비스 디자인 |
| <p>교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을 서비스 개선을 통한 활용도 향상 • 버스정류소 등 교통 환경 시설 개선 • 무인 통행료 징수 체계 개선 • 도심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디자인 • 교통, 공공환경 등 노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디자인 • 경치가 아름다운 길 정보제공(지도) • 대중교통 실시간 알림서비스의 통합 구축 등장 •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한 디자인 •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 |

| | |
|----------------|---|
| <p>보건 / 복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 • 무장애 도시를 위한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표준 모델 개발 • 교통, 공공환경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 장애인의 문화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 •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 새터민의 정착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 아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 유산, 낙태 등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을 완화 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 • 의료상식 및 복지혜택 공유에 따른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디자인 |
| <p>교육</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 시키는 기본 좋은 교육 환경 만들기 • 학원 폭력, 왕따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디자인 • 토론문화를 유도하는 수업 환경 디자인 • 교육효과를 높이는 디자인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디자인 • 장애인들에게 맞춤 지원 가능한 교육환경 디자인 •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소통과 연결되는 교육환경 디자인 •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돕는 초등학교 교실환경 디자인 • 이미지 기반의 해외학생교류시스템 디자인 |
| <p>산업경쟁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형 산업 환경 디자인 •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홍보하는 것 • 기업 경쟁력 한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사이트 운영 • 노동자, 실업자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개선 • 디자인 전문회사 경쟁력 강화 컨설팅 개발 • 산업 소비자공정 절약디자인, 서비스 언어격차 해소 디자인 • 산업단지를 일터, 배움터, 즐길터로 바꾸는 디자인 • 산업 소비자 공정절약 디자인, 서비스 언어격차 해소 디자인 • 낙후 지역 개발에 대한 VOC(voice of customer) 수집 및 전략 개발 • 산업 입지 여건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서비스 모델 개발 |

| | |
|---------|---|
| 문화 / 관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 국공립도서관 이용 지원 서비스 디자인 • 공공사인시스템 세계 표준화 디자인 • 공공환경에서의 실감 미디어 경험 향상을 위한 UX 디자인 • 신기술을 적용한 문화 콘텐츠 디자인 • 여가활동, 엔터테인먼트의 몰입도 증진을 위한 디자인 • 재래시장 리 디자인, 지역 상권부흥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 지역 고소터미널 관광 안내 서비스 디자인 • 지역특산품 및 공간 스토리텔링 디자인 •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
| 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사고 감소를 위한 디자인 • 방문형 보건소 의료 서비스전달체계 디자인 •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디자인 • 청소년 정서 함양 균형을 위한 디자인 • 노령화 대비 건강유지서비스 디자인 • 노약자를 위한, 예코 / U헬스 주거 환경 세계 표준 디자인 개발 • 건강검진 체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 건강증진을 위한 사무실내 환경 서비스 디자인 •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를 높이는 서비스 디자인 •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도민 서비스 |
| 행정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행정 서식류 디자인 행정 프로세스 디자인 • 시민 연대 활용 정책 디자인 • 지역 유휴 공간 및 공공시설물 예약 서비스 디자인 • 세금징수비용 효율화 및 사용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 선거용지, 선거환경 디자인 • 정치 커뮤니티 서비스 디자인 •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는 디자인 •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적 디자인 • 100% 온라인 민원 디자인 |

이상과 같은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분야별 주제는 도시문제 또는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가능성이 있는 분야로서 참고가 가능하며, 「공공디자인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야별 주제 및 대상을 추가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4) 소결(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적 접근)

위에서 언급한,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CPTED)과 편의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를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모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에 디자인이 접목되어, 그동안 디자인이 추구하여 왔던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가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공공디자인법」이 제정·시행됨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동법 제5조, 제6조),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특별히 위에서 설명한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CPTED)’과 ‘편의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디자인의 대상이 도시와 시민전체로 하므로 동일하고, 시민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를 디자인 한다는 점에서 목표가 동일하다.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도시문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적 방법론은 각각 다른 행정조직에 의해 실행되지만 대상의 중복, 물적 자원의 중복 등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행정체계 내에서 각각의 디자인 방법은 각기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조례 등이 별도로 제정, 운영 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 디자인부서 등이 기획 및 설계 등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고려하여야 한다.²⁹⁾ 그러므로 분야별 특성과 디자인방법을 융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동시에 정책비전을 실천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디자인의 연계, 나아가서 각각 다른 디자인방법간의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방법과 정책비전은 행정조직에 따라 적용대상은 같지만 기법이 다를 뿐 목표와 지향점은 유사하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연계의 당위성이 확보된다.³⁰⁾

즉, 셉테드와 유니버설디자인은 그 대상의 중복이 되는 것은 물론 경험되어질 서비스를 디자인 한다는 점에서 서로 중복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공공디자인법」 제 7조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게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셉테드 기본법(가칭)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유용하다 하겠다.

한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황과악-계획수립-전략시행-운영관리’ 단계로 진행됨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요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디자인 전문가, 행정기관 등 주체별 관계 맺기와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구체화되어야 한다.³¹⁾

29) 송영민,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과 디자인의 연계방안,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제49권,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17, 52쪽.

30) 위의 글, 53쪽.

31) 박정은·강석진·이경훈, 주민참여형 범죄예방디자인 방법 연구, 대한건축학

Ⅲ. 공공디자인으로서 셉테드 관련 법규의 종류와 문제점

셉테드와 관련된 국내 법규는 기본법 내지는 일반법적 규정은 없지만 몇 개의 법률에 개별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별적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들을 크게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국토 및 도시계획·도시재정비(도시경관, 도시시설 포함), 건축 등과 관련된 법률과, 다른 하나는 영상처리장치 등의 시설설치를 위한 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개별법에는 범죄예방을 직접 규정한 법률과 그렇지 않은 법률이 있다. 그리고 조례와 지침 등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경찰청은 2005년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셉테드의 입법화를 노력 하고 있으나, 셉테드의 사무 성격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소관 업무에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2010년에는 국토교통부에 셉테드 적용 의무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국토기본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및 시행규칙」 등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는 바, 「건축법」을 제외한 법률은 수용하였다. 당시 건축법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착화된 법규 개정보다는 ‘설계지침’등으로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³²⁾

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4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 2014.10, 251쪽.

32) 박현호, 앞의 책, 171-172쪽. 한편 동 저자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셉테드 관련 입법의지가 법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시켜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것은 제3자 경찰활동(Third Party policing: TPP)의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 범죄예방 등이 직접 규정된 법규 현행 셉테드 관련 법규의 종류

1) 셉테드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 국토기본법

동법은 제13조(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5조(도 종합계획의 수립) 제2항 제3의2호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개발법

동법은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은 다시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호에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제28조의 2(정비구역의 범죄예방)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안전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1. 순찰 강화, 2. 순찰 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동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제13의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광역단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의 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규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2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동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2항에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조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3.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4. 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5. 도시공원의 설치·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사용할 것 등이다.

(6) 초·중등교육법

동법 제30조의 8(학교의 안전대책) 제1항에서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신분확인 절차 및 영상정보처리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7) 아동복지법

동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등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8) 영유아보육법

동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주차장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방법설비는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에서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건축법

동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³³⁾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건축물을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에서는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

3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로 2015년 4월1일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 되었다. 동 고시는 제15조에 의하여 재검토기한을 정하고 있는 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한 이후에 이 고시가 어떻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이다.

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2) 셉테드 조례의 주요 내용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른바 셉테드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³⁴⁾ 특별히 2015년도와 2016년 상반기에 조례제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최근의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셉테드를 자치행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³⁶⁾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않고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하고(동법 제22조 단서),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위법하다.³⁷⁾ 물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 있는 바,³⁸⁾

34) 2017년 3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5곳,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95곳 정도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이창훈·최진혁·권도이, 위 논문, 297쪽 참조)

35) 이창훈·최진혁·권도이, 앞 논문, 298쪽.

36) 대판 2006.10.12., 2006추38.

37)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5판, 박영사, 2017, 184쪽.

38) 위의 책, 185-189쪽.

셍테드 관련 조례가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위헌논란은 피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향한 셍테드의 적극적 실행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셍테드가 자치단체 위주로 설계되고 시행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참여, 협조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느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의 셍테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근거³⁹⁾가 없는 조례이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규정을 둔다면 위헌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 및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는 기본방향, 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거의 대부분 조례가 마찬가지다.⁴⁰⁾

특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본 계획을 경관계획이나 도시디자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셍테드가 좁게는 해당 사업에 국한하여 시행되지만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경관 내지는 도시디자인 계획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그런 면에서 범죄예방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관법」⁴¹⁾이나 「공공디자인법」⁴²⁾은 셍테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39)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6.11.9.) 형태로 ‘범죄예방 기본법안’을, 경찰청에서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6.7.27.) 형태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박현호, 앞의 책, 181쪽).

40) 이창훈·최진혁·권도이, 앞 논문, 298쪽.

41)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경관조례’가 제정되었다.

42)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디자인조례’가 제정되었다.

43)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3) 셉테드 지침(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2009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과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있으며, 2010년에는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건축물 방범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를 예로 든다면 「2009년 서울특별시 재정비 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지침」,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CPTED 가이드라인」, 「2014년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어 있는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범죄예방이 직접 규정되지 않은 법규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16년 8월4일 시행되었다.⁴⁴⁾ 특별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

도 셉테드를 실행하는 데 관련된 핵심적인 법제로 판단하는 것(박현호, 앞의 책, 165쪽)과 같은 의견이다.

44) 법제처가 설명하고 있는 제정이유는 “국내 디자인 분야가 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지원, 수출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 측면의 디자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적·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로 인하여 ‘디자인’을 산업경쟁력과 경제자본의 확충을 위한 ‘기예’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공감하는 ‘문화’로서의 가치는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

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제2조 제1호)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법제처의 동법 제정이유에 의하면(각주 41참조)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디자인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공공적 성격의 디자인 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법은 5년마다 국가로 하여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위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근거를 부여하였다(제6조).⁴⁵⁾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 제5호), 공공디자인사업과(제10조) 공공디자인 용역(제11조)의 개념을 공식화함으로써 해당 실무자들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법적 근거에 기반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 이에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하고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이 필요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은 바로 셉테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하겠다.

45)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던 각종 디자인관련조례는 이 법의 제정으로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넓은 의미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의 법적 근거도 이 법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추진협의체 구성(제15조)에 있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영역의 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진행 되었지만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근거가 만들어 진 것은 물론이며, 관련사업의 예산편성이 가능해졌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개정 또는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디자인관련 사업이 의무사항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며, 그 근거가 없으므로 인하여 예산편성의 근거부족이라든가 법적 기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없어졌다고 보겠다.⁴⁶⁾ 또한 전담부서의 설치 내지는 인력배치(제17조)를 통하여 실질적인 공공디자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었다. 또한 문화체육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9조),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뛰어난 우수디자인 선정(제21),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경관법

경관법은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제1조)으로 2007년 5월에 제정되었는바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었던 '경관'을 실재하는 공공재로서 평가하고 법과 행정의 구체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간의 국토경관관리가 여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상황을 경관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와 같은 규제적 제도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제도의 미비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46) 최성호,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3, No.1, 2017, 617쪽.

그런데 2013년 8월 동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 1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2호).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제27조)는 물론이며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제28조)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경관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제32조),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강화도 규정하고 있다(제33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제1조) 국토를 용도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18조)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또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제24조) 동 계획은 도시·군 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제106조)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제113조)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임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1.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도시·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⁴⁷⁾

4) 소 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경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범죄예방’이 직접 규정되지 않은 법률이다. 그렇지만 이 법률들이 셉테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이라 생각한다. 각 개별 법률마다 그 목적이 있는 바,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 경관의 형성·보존관리,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등은 모두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 그 범위, 대상 등에서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즉 오늘날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체계적으로 잘 개발된 자연과 매우 어우러진 그러면서도 경관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디테일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범죄가 없는 안전한 도시에서 살기를 소망한다. 시각적인 요소와 비시각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토개발 및 도시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도시의 개발방안이라든가 공간계획을 구축한다.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물론이고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도시개발계획, 도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호에는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5년 7월 6일 개정 시에 삭제되었다.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범죄예방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 공공디자인 계획 등이 수립되는 순차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주택 포함), 공공시설물, 공공서비스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셉테드 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는 도시디자인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 명칭 | 목적 | 접근방식 | 공공영역 | | | | | | | | | 민간영역 | | | | |
|--------|----------|------|-----------|---------------------------------------|----------|------|-----|-------|------|-------|---------------|-------|-----|----|------------------|-------|
| | | | 도시 | SOC | 공원·광장·수변 | 가로공간 | 건축물 | 공공시설물 | 공공실내 | 공용품 | 국가·지역 이미지·브랜드 | 공공서비스 | 건축물 | 실내 | 기업·상품 이미지·트렌드·제품 | 기업서비스 |
| 국토계획법 | 국토체계적 관리 | 주요형식 | 종합계획 | 사업계획·실시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어수단 | 위원회 심의 | 인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경관법 | 경관성보존 관리 | 주요형식 | 경관기본계획 | 경관상세계획·경관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어수단 |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 | | × | × | × | 일부 연계 | × | × | × | × | × | |
| 공공디자인법 | 문화유권 증대 | 주요형식 | 공공디자인진흥계획 | 공공디자인 사업 (마스터플랜, 이미지 구축, 디자인, 운영기획 등) | | | | | | | × | × | × | × | | |
| | | 제어수단 |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지역위원회) | | | | | | | × | × | × | × | | |

도시의 공공 공간 환경이 이처럼 크고 작은 계획이 유기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때 도시의 삶은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그곳에 사는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 적극적인 애착을 가질 것이며 그러한 애착은 자연스럽게 도시문제의 해결에 적극적 참여자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⁴⁸⁾ 그런 면에서 범죄예방 규정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법률들은 셉테드의 디테일 측면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법률임에 틀림없다. 아래의 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이 되어 있다.⁴⁹⁾ 특별히 「공공디자인법」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규율할 수 있으므로 셉테드 관련 디자인의 신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현행 셉테드 관련 법규의 문제점(소결)

지난 2010년을 전후하여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셉테드의 개념 확산과 함께 입법적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범죄예방기본법안이 입법화 되지는 않았지만 노력중이고, 건축법에는 비교적 상세한 셉테드 관련 규정이 동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이르기까지 규정되어 있고 많은 개별법들이 범죄예방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가칭 셉테드 기본법 내지는 범죄예방기본법 등의 일반법의 부재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는 분명히 보여 진다고 하겠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인력 등이 없으며, 또한 사업을 위한 예산상의 문제도 그로부터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나

48) Randall I. Atlas,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CRC Press, Second Ed., 2013, pp. 669-696.

49) 최성호, 앞 논문, 621쪽 편집 사용함.

아가서 셉테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예방 관련 조항들은 건축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편적이고 선언적이며 상징적 조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특히 셉테드의 기본원리 특히 제2세대의 셉테드의 기본목표를 충분히 반영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⁵⁰⁾ 또한 셉테드 개념에 충실하자면 공공서비스디자인이 반영된 셉테드 보다는 단순히 영상처리장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즉, 셉테드 사업의 사업별, 지역별, 대상별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 도시의 정체성(identity)를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의 구체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고 도시의 경관이 조화롭게 만들어 진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환경개선도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당수의 법령이 하위 법령에 위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히 고시의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많은 바, 셉테드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히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치단체자의 책무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거 법에서 일정한 의무규정을 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조례를 근거하여서도 시민들의 셉테드 참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0) 이창훈·최진혁·권도이, 앞 논문, 297쪽.

IV. 공공디자인으로서의 셉테드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법적 과제

1. 셉테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범죄예방이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의 기본임무이다. 지역사회에서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분석, 진단하고 그에 대한 예방을 강구하고 실천하며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범인을 검거, 진압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삶의 질과 범죄의 문제는 국내외적 관심사이며 특별히 국민은 경찰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범죄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 수사라는 경찰의 두 가지 영역 중에서 범죄예방이 삶의 질에 더욱더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셉테드는 바로 범죄예방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것이며 그것이 실제 어떠한 업무 범위를 가지며 어떠한 적용대상인가, 나아가서 실행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며 추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는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로 하고 있으나, 셉테드는 성격상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사무의 성격에서 본다면 장기적·체계적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죄예방 기본계획 내지는 셉테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국적인 통일 내지는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즉 적용대상지역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절차,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 국토의 경관과의 조화 내지는 표준적 공공서비스디자인 등의 시행은 바로 국가 단위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차원의 해당업무 관련 입법⁵¹⁾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셉테드 실행력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적 계획 수립과 시행은 국가와 경찰에 있지만, 협업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가 주어진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셉테드 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셉테드의 주요 전략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해당 부분의 범죄취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내의 범죄취약지역 이나 공간의 개발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이나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별히 범죄유발 요소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요소들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역별 차별화된 범죄예방이 전략이 필요하며⁵²⁾ 조례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셉테드의 실행력 확보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의 실효성은 확실해졌다.

52) 강용길·박민영, CPTED 제도화를 위한 범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4권 제2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19쪽.

3.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의 요구나 관심사항을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이나 계획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특별히 셉테드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1세대적 셉테드와 달리, 2세대 셉테드는 물리적인 요소를 넘어서 사회적·문화적 유대와 집합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확보, 사회적 유대,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통한 비공식적 범죄통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즉, 범죄예방 워크숍이라든가 특별위원회, 자문그룹, 범죄지도의 작성, 범죄안전마을 브랜드 사업, 전시회 및 축제, 컨퍼런스 교육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이해(개인적인 규제 또는 제한에 대하여)를 구하기도 하며, 적당한 정보의 제공 및 범죄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공식화, 정형화 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4. 셉테드 관련 법률 내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려수단과 강제수단 규정

셉테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장려수단과 소극적 제재수단이 있을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차원에서 시행하는 셉테드에 대하여 그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갖추므로 인하여 적극적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셉테드 사업의 적극유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령이나 조례를 통한 셉테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거짓 인증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서는 설치미비 등으로 인한 과태료⁵³⁾ 규정을 두고 있다. 셉테드와 관련한 의무사항 내지는 인증요건이 법정화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행정질서벌 차원에서의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셉테드 사업의 실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

셉테드, 즉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의미를 디자인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넓은 의미의 공공디자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공공디자인을 대상 중심과 주제 중심으로 융합하여 접

5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일반규정이 만들어졌는바, 동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하면 셉테드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관념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⁵⁴⁾ 공공디자인 이라 함은 「공공디자인법」에 의하면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셉테드, 즉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은 ‘공공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이 제시하는 목적 조항(제1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대의 국민들에게 있어 문화향유권은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인바, 범죄예방과 심미성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충족된다면 국민 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되며,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도시는 브랜드화 되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만족도는 주민들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셉테드 사업이 국가 전체의 계획, 개발과의 조화 및 국토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 나아가서 「공공디자인법」과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셉테드 관련법이 국토의 경관과의 측면에서 보면 미시적 관점에서의 공공성과 심미성의 접근이라 볼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 나아가서 「공공디자인법」은 거시적 차원에서 심미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법률이라고 하겠다.

54) 넓은 의미로 통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범죄학과 디자인의 통섭,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건축과 연결하면 범죄학과 건축학의 통섭(이창무, 범죄학과 건축학의 통섭적 결합,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셉테드학회, 2010 참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와 같은 국토의 조화적 연계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게 된다면 이른바, 도시의 생활기준을 제고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전하고 안심한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접근방법인 제3세대 셉테드의 기본적 개념⁵⁵⁾에 다가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국가는 국민들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안전이다. 자연 재해로부터의 안전은 물론이지만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많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범죄의 증가는 삶의 기본적 요건인 안전을 심리적으로 위협한다. 국가는 이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전통적 수단과 함께 새로운 방법도 적극 고려하여야만 한다.

범죄예방 수단으로서의 셉테드는 범죄자와 내부적 범행동기(사회적 환경 포함)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를 이해하는 것과 달리, 물리적 환경을 반영한 상황적 범죄 예방의 한 부분으로서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며, 나아가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줌으로서 주어진 공간 환경에 대한 모든 사용자들의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 하는 범죄예방 전략인 것이다.

55) 박현호, 앞의 책, 44쪽.

셍테드는 물론 물리적 환경에 기본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러한 물리적 환경에 더하여 주민 참여 등 사회적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즉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상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거기에 더하여 경찰의 경찰활동까지 더하여 질 때 범죄예방의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공간 환경의 경우, 국가 전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인 공간 환경과 인위적인 공간 환경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 바, 셍테드는 주로 인위적인 공간 환경을 대상으로 셍테드 설계를 하게 된다. 물론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이 접하는 영역은 물론이며 자연환경 내에도 때로는 일정부분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은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분의 공간 환경과,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공간 환경이 인접하는 공간에 셍테드를 통한 범죄예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셍테드가 실질적인 범죄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실행력, 집행력이 중요한 바, 무엇보다 예산, 계획, 기획, 설계 등을 위해서는 강행 법률의 제정이 제일 중요한 바, 가칭 “범죄예방기본법” 내지는 “셍테드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가칭 “범죄예방기본법” 내지는 “셍테드기본법”에는 경찰업무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무이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야 함은 물론 재량적 여지보다는 기속적인 의무 규정으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역할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의 치안환경의 변화는 범죄예방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계획은 국가의 전체적인 자연공간과의 조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된 인문환경과도 조화롭게 디자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셍테드위원회”를 두어서 범죄위험평가제도의 확립은 물론이며 중앙과 지방의 여러 가지

공간 환경에 디자인의 일반적 개념인 심미적 요소와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적 요소가 조화롭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셉테드 실행력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셉테드 관련 조례제정의 근거를 두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자연 공간 및 지역특수성에 연계하여 셉테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셉테드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개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환경개선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부분의 공간 환경이 선도적으로 심미성 및 공공성을 갖추어 디자인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하여 주민의 참여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자발적 참여가 필요로 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셉테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의무부과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 과태료부과를 검토해보았다.

끝으로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 조형적 차원에서의 미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디자인을 매개로 하여 생겨나는 상호작용, 소통적 의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죄 예방적 기능을 담고 있는 공공을 위한 서비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문화적 가치, 사회적 상징성도 내재된 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셉테드 개념이 관련 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디자인법」의 제정으로 도시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등장한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확산을 통하여 셉테드의 대상, 종류, 기능 등의 다양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법 제5조는 공공디자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3항 제3호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4호는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셉테드 분야에도 긍정적인 요소임이 틀림없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자인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바, 국가 전체적인 개발과 경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경관과 지역특색, 나아가서 공공서비스디자인과 결합된 셉테드(심미적 요소와 공공적 요소 결합된)가 상호 조화가 될 때, 도시는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함께 삶의 질이 좋아 질 것이다. 셉테드 관련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 접수 : 2017. 11. 20, 심사 개시 : 2017. 11. 23, 게재 확정 : 2017. 12. 20〉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수봉, 셉테드(CPTED) 개념을 적용한 안전한 어린이 공원, 박영사, 2014.
- 박군성, 행정법론(하), 제15판, 박영사, 2017.
- 박현호, 범죄예방과 환경설계 -CPTED와 범죄과학-, 제2판, 박영사, 2017.
- 서정렬, 도시공공디자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년 4월.
- 요시히코 가와우치 /홍철순·양성용 역, Universal Design, 선인출판사, 2005.
-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 박영사, 2015.
- Timothy D. Crowe, Lawrence J. Fennelly, / 한국셉테드학회 역,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범죄 예방설계), 기문당, 2016.

2. 논문

- 강용길·박민영, CPTED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 연구, 제14권 제2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 김중환·박미랑, 건축법상 조경기준과 CPTED 조례의 충돌 -쓰레기 보관공간의 조경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셉테드학회지, 제8권 제1호, 2017.
- 남궁윤재·황성길,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동향 분석 -1991~2016년까지의 국내 학위 및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 23, No. 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7.

- 박순정, 서비스디자인과 창의적 통섭의 관계성 연구 -공공서비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4 No.4, 2014.
- 박정은·강석진·이경훈, 주민참여형 범죄예방디자인 방법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2호(통권 제62집), 2014.
- 박정숙·장영호,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1, No.2,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 박현호,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술적, 제도적 발전방향 연구, 경찰과 사회, 제2집, 경찰대학, 2007.
- 박현호·강소영, CPTED활성화를 위한 범죄영향평가의 법제화 방안: 한국 환경영향평가법과 호주 환경계획평가법(EPAA)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공인행정학회보, 제39호, 한국공인행정학회, 2010.
- 성현곤, 도시 디자인과 교통안전, 월간 교통, Vol.211, 교통안전공단, 2015.
- 송영민,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과 디자인의 연계방안,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vol.40, 2017.
- 신의기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 형사정책연구원, 2008.
- 오창섭,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디자인,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73호, Vol.20 No.5, 2006.
- 원동욱·권영인, 셉테드(CPTED) 주차장 적용 사례 및 시사점, 월간 교통, vol. 222, 2016.
- 윤지영,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의 힘, BDI포커스, 제189호, 2013.
- 이양숙·나건, 공공디자인 4.0:공공디자인의 확장과 진화,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0권 제2호, 2014.
- 이명원, 범죄예방기본법,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치안정책리뷰, 제50호, 2015.

- 이영범, 도시건축에서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화 방안 - 영국 도시건축위원회(CABE)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7, 2010.
- 이재선·박현호·오세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8.
- 이준호, 도시공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스템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11.
- 이창무, CPTED:범죄학과 건축학의 통섭적 결합,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권 제1호, 2010.
- 이해주·강석진·박소연·이경훈, 디자인 서울거리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CPTED 적용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2015.6.
- 이호상,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방법론 연구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제14권, 2013.12.
- 이희정·황재훈·박성근, 디자인과 도시경쟁력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도시정보, 312호, 2008년 3월.
- 정경석·하창현, 새로운 도시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지자체의 역할, 경남발전, 제93호, 2008년 7월.
- 조영진,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건축과 도시공간, vol. 21, 2016.
- 주미옥, 행위지원형 공공미술을 활용한 자연감시기능강화-행위지원을 통한 자연감시기능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셉테드학회지, 제6권 제2호, 2015.
- 최석준, 공공디자인과 창조성에 관한 상관관계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3권 제4호, 2007.

- 최성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조명, 조명·전기설비, 제23권 제5호, 2009.
- 최성호,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 학회지vol.23, No.1, 2017.
- 최재은·정윤남·김세용,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7권 제3호, 대한건축학회, 2011.
- 표창원,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과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행정의 책임, 한국행정학회 학술논문발표집, 2002.12.
- 하혜영·권용훈, 범죄예방설계(CPTED)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1158호, 2016.
- 한재경, 범죄발생공간의 소유 관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제5권 제4호, 2015.

II. 외국문헌

1. 단행본

- Christopher Ansell and Jacob Torfing Ed., Public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and Design, Routledge, 2014.
- Edward Steinfeld·Jordana maisel, Universal Design: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WILEY publishing, 2012.
- Randall I. Atlas,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CRC Press, Second Ed., 2013.

< ABSTRACT >

A Study of Legal Project to Resolve Urban Problems by Public Design - On Crime Prevention -

Kim, Chang-Hwee

The first duty of police is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ies. For this duty, a police prevents, suppresses, and investigates crime, and crime prevention is the best way to perform this duty. As a measure of crime prevention, the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ontaining design components or meanings is being highlighted. Various environmental design to prevent crime within cities may be regarded only as structures in general, but now, necessities of the CP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public facilities or structures are being discussed.

Not only laws and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but also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concentrate on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CPTED. However, there are limits in effect of the CPTED as only one or two articles within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without fundamental and consolidated laws. Above all, there are not enoug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ntroduce essence of the CPTED, and as the CPTED is concentrated on physical improvement, there are issues in follow-up management. Moreover, there is insufficient improvement on awareness by the parties of interests for

sustainable administration, and the infrastructures and systems (public official, expert, community involvement, etc.) are still far behind for effective support.

Especially, since the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through the CPTED makes cities to be fragmented, the entire natural landscape of a city and the CPTED may not create the overall harmony. When the aesthetic components and functions as crime prevention of the CPTED, or the public design component, harmonize with urban natural landscape, the quality of urban people's life is improved, and a city may be branded for its sustainability. With respect to the abov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andscape Act and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has been reviewed.

In this study, the laws and regulations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CPTED as a type of public design have been reviewed. Moreover, to prevent possible fragmentation of cities from the CPTED as a part of urban physical improvement of building-oriented and facility-ori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scape Act and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has been reviewed.

◆ Key Words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Landscape Act, Public Design Promotion Act, CPTED Act, Crime Prevention Act, Urban Design.

